서울지방세무사회-세무정보(2024-4)

□ 4월의 세무일지

구 분	세 무 일 지
11일(목)	▪ 3월분 매출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발급 기한 ▪ 원천징수분 법인세 · 소득세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납부 ▪ 종업원 분 주민세 신고 납부 ▪ 12월 결산법인 인정상여 지급명세서 및 원천세 신고 ▪ 4대보험료 납부
15일(월)	▪ 고용 · 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25일(목)	▪ 2024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및 납부 ▪ 3월 폐업신고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
30일(화)	▪ 12월 결산법인 중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세 신고납부 ▪ 3월 지급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3월 지급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1]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3월 귀속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및 세무확인서 등 제출기한

1)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분에 한함

□ 4월 25일은 2024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입니다.

1. 개인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납부하여야 한다.

2. 법인 사업자

1월부터 3월까지의 실적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
다만,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의 경우는 개인 사업자와 같이 고지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3.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이 1억원 이상인 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여야 한다.
단, 2024년 7월 1일부터는 공급가액 기준이 8천만원으로 하향 조정됨.

4.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추징사례

가. 사업과 관련 없는 고가 오토바이를 구입하고 공제받은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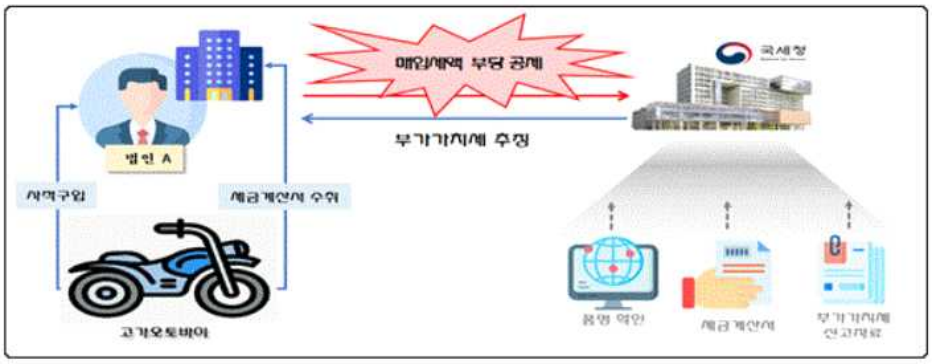

운수업 등과 관련없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가의 오토바이를 취득하였음. 과다 공제 매입세액을 추징함.

나. 면세사업에 사용한 건물 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당초 민박을 목적으로 한옥을 건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음. 그러나 농어촌 민박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민박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업자로 확인.

해당 매입세액은 주택임대(면세)에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전액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감수 : 서울지방세무사회 신철 연수이사]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임 채 수** 올림